

## (법무부 알림) 중국투자자 ISDS 사건 판정 선고 결과 관련

작성일	2024.05.31	조회수	629
담당부서	대변인실	담당자	홍보담당관 한정진
전화번호	02-2110-3038	공공누리	2유형

**[법무부에서 알려드립니다 - 중국투자자 ISDS 사건 판정 선고 결과 관련]**

- 중국투자자(“민OO”)가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관련, 정부는 오늘 03:58경(한국시간) 중재판정부로부터 판정문을 수령하였습니다.
- 중재판정부는 ‘대한민국 전부 승소’ 판정을 선고하였습니다.
- 본 사건은 최초 청구액 약 2조 원, 최종 청구액 약 2,641억 원 상당에 이르는 사건으로, 중재판정부는 청구인의 투자는 위법하여 한-중 투자협정상 보호되는 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받아들여 청구인 측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한편, 청구인 측으로 하여금 우리 정부의 법률비용 및 중재비용 총 합계 약 49억 1,260만원 및 그 지급시까지의 이자를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 정부는 판정문 분석 결과 및 향후계획 등에 대하여 추후 보도자료를 배포할 계획입니다.

첨부파일이(가) 없습니다.

목록

이전글	(법무부 알림) 중국투자자 ISDS 사건 판정 선고 예정 관련
다음글	다수 언론의 「쇠톱으로 전자발찌 훼손한 40대 검거」 보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2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